자산보관 •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•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"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"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02-2004-8963/0991

1.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모펀드 : 피델리티 이머징 마켓 증권 모투자신탁 (채권 - 재간접형)
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
증권[채권-재간접형] 집합투자기구/ 종류형 (A, C, C-e, C-W, N) / 모자형
다. 보관 •관리기간: 2012.05.06 – 2013.05.05
라. 집합투자업자: 피델리티자산운용(주)
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신한금융투자, 한국투자증권, 대신증권, 대우증권, 신영증권, 동양증권, SK증권, 케이비투자증권, 하이투자증권, 미래에셋증권, 하나대투증권, 아이비케이투자증권, 이트레이드증권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, 국민은행, 외환은행, 한국씨티은행, 부산은행, 홍콩상하이은행, 미래에셋생명, 키움증권, 우리투자증권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2.06.01	제 20 조의 2 (판매수수료) : 기재 오류 정정	이 경우 그 기준을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	삭제
2012.06.01	제 23 조 (환매수수료) : 환매수수료 조항 변경	환매수수료	2012 년 9 월 3 일 이후부터 환매청구시: [종류 A, A-e, C, C-e, C-w, I, F 및 N 수익증권] 환매수수료 없음
2012.06.01	제 26 조 (수익증권의 환매연기)	나.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	나.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
2012.06.01	제 27 조의 2	추가 단서 조항	2012 년 8 월 31 일까지 환매청구하는 경우로서
2012.06.01	제 39 조	한국예탁결제원의	삭제
2012.06.01	제 49 조 (신탁계약의 변경)	제 4 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 4 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 및 동법 시행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2013.01.23	종류 추가	종류 CP 추가에 따른 변경에 따른 신설조항	제14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제①항, 제20조 (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) 제①항,제40조 (투자신탁보수) 제③항
2013.01.23	기간 경과에 따른 업데이트	제 23 조 (환매수수료)	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.
2013.01.23	기간 경과에 따른 업데이트	제 27 조의 2 (투자신탁의 전환)	삭제
2013.01.23	제51조 (수익자에 대한 공고 등) : 관련 법령 개정 반영	2. 게시하거나 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	2. 게시하고 1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5. 판매회사를 운용경력(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,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) 5.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
2013.02.06	종류 CP 삭제에 따른 변경	제14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,제①항,제20조 (수익증권의 판매기준 및 판매가격) 제①항,제38조 (운용 및 투자 제한) 제40조 (투자신탁보수) 제③항	종류 삭제에 의한 조항 삭제

* 자세한 변경사항은 http://dart.fss.or.kr 을 통해 서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.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회계감사인의 선임 •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		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
삼일회계법인	1 년	264 만원	서면계약	-	-	-	-	-

*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 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.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□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의 여부
- 부합함
□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적정함
□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- 해당사항없음
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- 공정함
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 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- 적정함
□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 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- 해당사항없음
□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 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 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□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- 해당사항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